

# 인쇄기준요금

2024.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목 차 >

I. 인쇄기준요금 적용 기준 .....	1
II. 일반인쇄 .....	2
1. 전자조판 및 편집료 .....	3
2. 필름 출력력비 .....	5
3. 인쇄판대 .....	6
4. 옵셋인쇄료 .....	7
5. 책자제본료 .....	8
6.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조판료 .....	9
7.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옵셋인쇄료 .....	10
8.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제본료 .....	11
9. 옵셋윤전인쇄료 .....	12
10. 자동책자제본료 .....	13
11. 인쇄용지손지율 .....	14
III. 경인쇄(마스타제판) .....	15
1. 경인쇄기준요금 .....	16
2. 경인쇄요금계산체증표 .....	17
IV. 복사단가 .....	19

# I. 인쇄기준요금 적용 기준

1. 이 기준요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발주금액이 건당 일천만원(10,000,000/VAT포함) 미만의 인쇄물에 대한 기준요금을 정한 것이며, 단 기획 및 편집·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은 제외함.
2. 일반인쇄 기준요금은 재료비(용지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인쇄 및 복사기준요금은 재료비(용지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음.

구분	재료비 (용지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일반인쇄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경인쇄,복사요금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3. 일반인쇄 중 재료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아래와 같이 정함.

구분	적용기준	비고
재료비 (용지대)	시중거래가격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8%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정한 비율(14%)의 60%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정한 비율(25%)의 60%

4. 이 기준요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요금과 시중거래가격을 참고하여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5. 이 기준요금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

## Ⅱ. 일반인쇄

# 1. 전자조판 및 편집료

(단위 : 면/원)

구 분	관 형	기준단가
일반책자	4×6배판(16절)	9,045
	4×6 판(32절)	5,580
	국 배 판(10절)	13,167
	국 판(25절)	6,552
	크라운판(18절)	7,722
화 보	4×6배판(16절)	22,860
	4×6 판(32절)	12,951
	국 배 판(10절)	32,130
	국 판(25절)	18,450
	크라운판(18절)	20,070

- 주 : 1) 본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색분해(스캔비)를 포함한 요금입니다.  
 2)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3) 단서는 1단 증가시마다 가로쓰기 요금의 5%를 가산한다.  
 4) 조판 완료후 원고변경시 전면 변경은 100%, 부분변경은 그 변경비율에 따라 가산한다.  
 5) 슬라이드대여료, 컬러프린터 및 인쇄교정을 필요로 할때는 시중가격을 준용한다  
 6) 표지, 커버, 포스터, 상업인쇄물의 디자인과 컷, 삽화 등은 시중가격을 준용한다.  
 7) 2색 또는 3색 기준으로 전자조판 및 색교정할 경우에는 일반책자 기준요금의 40%, 50%를 각각 가산한다.  
 8) 화보는 3색이상 칼라인쇄를 적용한다  
 9) 외국문자중 벽자나 약자의 혼합판은 내용에 따라 시중가격을 적용한다.  
 10) 일반책자 9포인트 이하일 경우 10%를 가산한다.  
 11) 조판 및 편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감액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1-1. 조판 및 편집료할증 조건표

판 형	기본 요금	외국문자 혼합(영문제외)					통계,도표,특수문자,명단			
		5-10% 혼합	10-20% 혼합	30-50% 혼합	60-80% 혼합	90-100% 혼합	10-20% 혼합	30-50% 혼합	60-80% 혼합	90-80% 혼합
		10%할증	20%할증	30%할증	40%할증	60%할증	30%할증	50%할증	70%할증	90%할증
4×6배판	9,045	9,945	10,854	11,754	12,663	14,472	11,754	13,563	15,372	17,181
4×6 판	5,580	6,138	6,696	7,254	7,812	8,928	7,254	8,370	9,486	10,602
국 배 판	13,167	14,481	15,795	17,109	18,432	21,060	17,109	19,746	22,383	25,011
국 판	6,552	7,209	7,857	8,514	9,171	10,476	8,514	9,828	11,133	12,447
크라운판	7,722	8,487	9,261	10,035	10,809	12,348	10,035	11,583	13,122	14,670

## 2. 필 름 출 력 비

(단위 : 원)

구 분	기 준 단 가			
	1도	2도	3도	4도
전지	27,045	54,090	81,135	108,180
2절	14,463	28,926	43,389	57,852
4절	7,236	14,472	21,708	28,944
6절	5,418	10,836	16,254	21,672
8절	3,609	7,218	10,827	14,436
10절	2,250	4,500	6,750	9,000
16절	1,809	3,618	5,427	7,236
18절	1,530	3,060	4,590	6,120
25절	1,179	2,358	3,537	4,716
32절	900	1,800	2,700	3,600

### 3. 인쇄판대

(4×6판기준)

(단위:원)

구 분	2 절	전 지	국 판 전 지
P . S 판	10,926	18,801	4x6판 전지의 69.4%

주 : 1) 4절은 2절 요금의 50%를 계상하고, 4절 미만은 4절로 본다.

2) 인쇄판(P.S판)의 내쇄력 : 70,000통

#### 4. 옅색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 (통 당)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1,000통 까지	11.95	21.34	30.93	39.11
2,000통 까지	10.82	19.27	27.69	35.14
3,000통 까지	9.63	16.96	24.27	30.46
5,000통 까지	8.37	14.58	20.61	25.86
7,000통 까지	7.80	13.49	18.81	23.66
10,000통 까지	7.05	12.13	16.68	21.03
13,000통 까지	5.86	9.99	13.44	17.00
13,000통 초과	4.65	7.69	9.95	12.86

주 : 1)  $150\text{g}/\text{m}^2$  이상의 후지 또는  $50\text{g}/\text{m}^2$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2) 원색인쇄는 20%를 가산한다.

3) 금분, 은분, 필(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4)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5) 국관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감산한다.

6) 1,000통 미만은 1,000통으로 계산한다.

7) 4×6전지 단일 인쇄물로 4도 인쇄시 70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인쇄 요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산한다.

가) 4×6전지 70원 이상 100원 미만 : 3%

나) 4×6전지 100원 이상 150원 미만 : 5%

다) 4×6전지 150원 이상 200원 미만 : 6%

라) 4×6전지 200원 이상 : 7%

8) 3절인쇄는 2절인쇄의 67% 요금을 계산한다.

9) 전지는 2절인쇄의 100% 가산, 4절은 50% 감산한다.

## 5. 책 자 제 본 료

(면당)

(단위 : 원)

판 형	무 사 무 선 철	반 양 장	양 장
4×6배판(16절)	0.876	1.020	1.455
4×6 판(32절)	0.693	0.823	1.212
국 배 판(10절)	1.514	1.782	2.597
국 판(25절)	0.718	0.871	1.243
클라운판(18절)	0.782	0.944	1.341

주 :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100g/m<sup>2</sup>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1,000부 미만은 1,000부로 계산한다.

4)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반 양 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 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5)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나 8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 6.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조판료

(면당)

(단위: 원)

절 수	기 준 단 가
2절	51,597
3절	41,517
4절	32,913
5절	23,436
6절	19,548
8절	17,163
9절	13,590
10절	12,510
16절	8,982
25절	5,400
32절	3,960

- 주 : 1) 표시되지 않은 절수의 조판료는 가까운 절수의 요금으로 계산한다.
- 2)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의 조판료 할증은 전자조판료 할증 조건표의 혼합비 할증율을 준용하며,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 3) 활판조판일 경우 20,000통 인쇄를 기준으로 1판씩 추가 계산한다.

## 7.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옵셋인쇄료

(4절 단면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통 당)	
	1 색 도	2 색 도
1,000통 까지	10.22	18.36
2,000통 까지	9.17	16.32
3,000통 까지	8.32	14.44
5,000통 까지	7.04	12.31
7,000통 까지	6.67	11.35
10,000통 까지	6.10	10.27
13,000통 까지	4.96	8.34
13,000통 초과	3.94	6.42

주 : 1) 150g/m<sup>2</sup>이상의 후지 또는 50g/m<sup>2</sup>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2) 금분, 은분, 필(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3)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4) 연번호인쇄는 별도1색도로 계산하며 20%를 가산한다.

5) 미상으로 절취선을 넣을 때에는 30%를 가산한다.

6) 1,000통 미만은 1,000통으로 계산한다.

7) 활판으로 인쇄시는 1색도 요금의 25%를 가산한다.

## 8.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제본료

(무사무선철, 100매 1권 기준)

(단위 : 원)

관 형	기 준 단 가
4절	105.02
8절	78.11
16절	56.16
32절	31.11
50절	20.94

- 주 : 1)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요금은 큰절수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박엽지, 100g/m<sup>2</sup>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복사용 인쇄물의 경우에 2매 1조는 300%, 3매 1조는 400%, 4매 1조는 500%를 가산한다.  
 4) 권당 50매 미만일 경우에는 30%를 감산한다.  
 5) 띠돌림 제본시에는 무사무선철 요금으로 계산한다.

## 9. 읍셋윤전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통 당)			
	1색도	2색도	3색도	4색도
50,000통 까지	3.22	5.86	8.38	10.64
70,000통 까지	3.06	5.39	7.76	9.80
100,000통 까지	2.82	4.95	6.93	8.77
150,000통 까지	2.42	4.23	5.96	7.50
200,000통 까지	2.35	4.00	5.57	7.02
200,000통 초과	2.31	3.67	5.26	6.55

주 : 1) 국관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각각 감산한다.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3) 50,000통 이상 인쇄물이라도 매엽기인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요금을 따르지 않는다.

4) 1색도 인쇄의 경우 불가피하게 2색 윤전기 이상의 시설로 인쇄하는 경우 1색도 요금에 30%를 가산한다.

## 10. 자동 책자제본료

(면당)

(단위 : 원)

관 형	무사무선철	반 양 장	양 장
4×6배판(16절)	0.531	0.648	0.903
4×6 판(32절)	0.436	0.507	0.754
국 배 판(10절)	0.942	1.093	1.565
국 판(25절)	0.459	0.545	0.784
클라운판(18절)	0.495	0.598	0.826

주 :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또는 120g/m<sup>2</sup> 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반 양 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 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4)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 (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나 8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 11. 인쇄용지손지율

### (1) 옵셋(매엽기)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통 까지	9.0	12.0	14.0	17.0	18.0	23.0	23.0	29.0
2,000통 까지	8.2	11.1	13.0	16.0	16.5	21.5	21.0	27.0
3,000통 까지	7.0	9.3	11.0	14.0	14.0	18.5	17.5	23.0
5,000통 까지	5.5	7.3	8.4	10.8	11.0	14.5	13.5	18.0
10,000통 까지	3.7	5.0	5.7	7.2	7.5	9.9	9.3	12.4
13,000통 까지	3.4	4.6	5.2	6.6	6.9	9.0	8.6	11.3
13,000통 초과	2.5	3.3	3.8	4.8	5.0	6.5	6.3	8.2

### (2) 옵셋윤전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50,000통 까지	6.5	7.8	7.8	9.4	9.1	11.0	10.0	12.0
70,000통 까지	5.9	7.1	7.1	8.5	8.3	10.0	9.2	11.0
100,000통 까지	4.9	5.9	5.9	7.1	6.9	8.3	7.8	9.3
150,000통 까지	4.1	5.0	5.0	6.0	5.8	7.0	6.6	7.9
200,000통 까지	3.6	4.4	4.4	5.3	5.1	6.2	5.8	7.0
200,000통 초과	3.5	4.2	4.2	5.1	4.9	5.9	5.6	6.7

### Ⅲ.경인쇄(마스타 제판)

# 1. 경 인 쇄 기 준 요 금

(면당)

절 수	용 지	10포	9포	8포 및 통계	체증(10부마다)
		50부 까지			
8절	신문용지	13,572	14,652	15,912	132
	중 질 지	13,743	14,823	16,083	157
	백 상 지	13,833	14,913	16,173	183
10절	신문용지	10,764	11,619	12,609	122
	중 질 지	10,836	11,691	12,681	140
	백 상 지	10,935	11,790	12,780	157
16절	신문용지	7,263	7,848	8,523	81
	중 질 지	7,308	7,893	8,568	91
	백 상 지	7,362	7,947	8,622	101
25절	신문용지	4,959	5,292	5,697	72
	중 질 지	4,986	5,319	5,724	74
	백 상 지	5,022	5,355	5,760	80
32절	신문용지	3,735	4,032	4,401	47
	중 질 지	3,744	4,041	4,410	50
	백 상 지	3,771	4,068	4,437	55

주 : 2011년도 조달청 단가계약금액 적용

## [계 약 특 수 조 건]

1. 조판(원판출력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때는 아래 금액을 감액한다.

구 분	조판생략 감액 <sup>(1)</sup>	조판생략 감액 <sup>(2)</sup>	조판생략 감액 <sup>(3)</sup>
8 절	7,704	6,021	3,978
10 절	6,102	4,635	3,150
16 절	4,158	3,123	2,142
25 절	2,655	2,088	1,377
32 절	2,151	1,350	1,116

주) (1) 조판생략 감액 :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 활용할 때

(2) 조판생략 감액 :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 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조판생략 감액 :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2.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인쇄요금 계산체증표에 의한다.

## 2. 경인쇄 요금 계산체증표

### <기본사항>

1. 원판의 수량은 당해 절수의 인쇄면수로 한다.
2. 최저기준 부수를 50부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수에 대하여는 매 10부마다의 가격을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9포인트 및 8포인트로 구분하고 10포인트보다 큰 활자는 10포인트로 한다.
4. 행간간격이 10.5포인트 2분 이상일 때에는 일반인쇄기준요금 전자조판료의 해당요금을 준용 한다.
5.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41%, 10부마다의 요금에 31%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본문용지>

1. 본문용지의 지질은 신문용지 54g/m<sup>2</sup>, 중질지 70g/m<sup>2</sup>, 백상지 80g/m<sup>2</sup>을 기준으로 하고, 평량이 실제 인쇄하는 지질과 15g/m<sup>2</sup>이상 차이가 나거나 15g/m<sup>2</sup> 미만의 차이가 나더라도 총 인쇄량이 5연 이상인 경우에는 용지대를 가감한다.  
(용지대 가감액 산정방법 : 용지 총 소요량(연)×지질별 시중 용지가격의 차액)
2. 본문용지의 크기는 8절, 10절, 16절, 25절, 32절로 구분하고, 그 중간크기의 요금은 큰 절수가격에 의하되 용지대를 차감한다.
3. 단면인쇄물의 용지 소요량이 0.5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요량에 용지대 시중 거래가격을 곱하여 가산한다.
4. 경인쇄기로 인쇄할 수 없는 크기의 인쇄물이나 2색도 이상의 윗셋인쇄물이 합본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일반인쇄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이 30%정도 섞인 혼합

판은 해당 포인트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30%를 가산한다.

6. 인쇄면중 제목이나 두문 또는 패선만으로 구성되거나, 면당 타자량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10포인트 요금에서 30%를 감산한다.
7. 조판(원판출력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때는 계약특수조건의 금액을 감액한다.
8. 조판완료후 원고변경시에는 조판생략 감액(2)의 금액을 원고변경 비율과 곱하여 가산한다.

#### <표지가격>

1. 표지는 백상지 80g/m<sup>2</sup>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 가격에 의한다.

가.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나. 10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다.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라.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마.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2. 기본 1도 이외의 추가 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 당 2.5매를 기본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아트지, 레자크지 등을 사용할 때는 추가 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 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 절수의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IV. 복사단가

## 복사·제본요금

<복사·제본물 단가 요금표>

규격	복사단가		제본비(1권) 표지인쇄포함		코팅시 추가비용 (1권)	비고
	단면시	양면시	소프트	하드		
B5(18절)	45	40	2,100	2,500	600	하드표지 제본은 10부이상시 적용
A4(16,11절)	55	50	2,300	2,700	800	
B4(8절)	70	60	2,600	3,400	1,100	
A3(5,6절)	90	80	3,100	3,900	1,200	
A2(4절)	800	-				
A1(2절)	1,000	-				
A0(전지)	1,800	-				
칼라복사(A4)	500	450				

- 상기요금 이외의 사항이 추가될 경우 시중가격에 의한다.
  
- 상기요금보다 시중가격(거래업체 기준단가 포함)이 낮을 경우 시중가격(거래업체 기준단가)에 의한다.